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안 제2조)
-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제4조)
- 다. 연구개발·보급 등의 추진(안 제5조)
- 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안 제6조)
- 마. 치유농업사의 배치(안 제7조)
- 바.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안 제8조)
- 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9조·제10조)
- 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11조)
-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및 과태료(안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 29. ~ 2. 18.)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농촌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추진방향과 목표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연구개발·보급 등의 추진)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유농업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활동·자원 발굴 및 효과검증
2. 치유농업 프로그램·사업모델 개발 및 표준화
3. 치유농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기준 연구
4. 치유농업활동 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자재, 시설 등 기술개발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급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교육·훈련사업

2. 치유농업 연구성과 및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지원

3. 치유농업시설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

4. 치유농업시설의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 지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시설의 관리상태, 환경 안전성, 적합성

2. 치유농업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적절성

3.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의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역량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2차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제2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로서 연구 또는 교육 담당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
소가 아닌 곳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
출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창업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 및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관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제7조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1급 치유농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일반직공무원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한 자에 한한다.

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제2조 관련)

등 급	구 분	업무범위
1급 치유농업사	경영·기획	○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경영·기획 업무 (2급 치유농업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 치유농업 종사인력 관리·교육 ○ 치유농업사업 컨설팅
2급 치유농업사	실행·관리	○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실행·관리 업무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계획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실행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평가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 치유농업시설 안전관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6조제4항 관련)

1. 응시자격

등급 구분	응시자격
1급 치유농업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된 업무(치유농업 환경을 조성·유지·개선하고, 치유농업자원을 적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평가하는 등의 치유농업 사업장의 경영과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관련 학과의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시험과목

등급 구분	시험방식	시험과목
1급 치유농업사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치유농업 대상 이해
		치유농업 활동소재 및 환경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 경영관리
	2차 시험 (논술·약술 혼합형 실기시험)	치유농업 관리 실무
2급 치유농업사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치유농업 대상 이해
		치유농업 활동소재 및 환경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차 시험 (논술·약술 혼합형 실기시험)	치유농업 운영 실무

3.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치유농업사의 배치기준(제7조 관련)

배치시설	등급	
	1급 치유농업사	2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교육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시설	1명 이상	1명 이상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교육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1명 이상	1명 이상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시설 및 장비	가.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 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1실 이상의 강의실(연면적 50㎡ 이상, 기준인원 20명) 및 실습장(연면적 100㎡ 이상) 등 교육시설과 컴퓨터·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갖추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그 밖에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둘 것
인력	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 책임교수요원 : 아래 1)에서 3)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교수요원(내부 전임강사) 최소 1인 이상 확보 1)관련분야* 박사 이상의 학위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 3)치유농업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 교수요원 : 아래 1)에서 3)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내부 전임강사) 최소 1인 이상 확보 1)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사이상 자격소지자 3)치유농업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전담하여 운영·관리하는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 할 것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1급·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 나.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1급·2급 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구성할 것 1)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2) 치유농업 활동 소재 및 환경관리 3)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경영관리 5) 치유농업 운영 실무 등 다. 그 밖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할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연 락 처	(063) 238 - 0722